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3. (생 략)</p> <p>4.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적재)확인서” (이하 “반입적재확인서”라 하며, 구분 시 가목은 “반입확인서”, 나목은 “적재 확인서”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확인하고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p> <p>가. (생 략)</p> <p>나. 법 제4조제4호 및 규칙 제2조제4항에 따른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하는 <u>선(기)용품(판매용품 포함)</u></p> <p>10. “환급심사”란 환급신청등에 대하여 환급금등이 정확한지 여부를 세관장이</p>	<p>제2조(정의)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 ----- ----- -----.</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 ----- <u>선박(항공기)용품</u>-----</p> <p>10. ----- -----</p>	<p>○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p>

심사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이 구분한다.

가. “환급전심사”란 환급금등을 지급 (기납증 또는 분증의 경우 발급)하기 전에 환급금등이 정확한지 여부를 제출된 서류 등에 의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나. “환급후심사”란 환급금등을 지급 (기납증 또는 분증의 경우 발급)한 후에 관세환급시스템에 의하여 선별되거나 자체 선별한 환급신청등에 대하여 환급금등이 정확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11. “서면조사”란 일정기간 동안 업체의 환급신청등에 대하여 환급금등이 정확한지 여부를 해당 업체가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12. “실지조사”란 일정기간 동안 업체의

-----.

가. “환급 전 심사”란 -----

-----.

나. “환급 후 심사”란 -----

-----.

11. “서면심사”란 -----

-----.

12. “방문심사”란 -----

○ 띄어쓰기 오류 수정

○ 띄어쓰기 오류 수정

○ 관련 행정규칙 용어 반영

○ 관련 행정규칙 용어 반영

환급신청등에 대하여 환급금등이 정확한지 여부를 해당 업체의 제조장 등을 방문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13. 법 제2조제5호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가.·나. (생략)

다.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일괄납부할 관세등

14. “신용담보업체”란 법 제6조에 따라 세관장이 납세자의 환급실적(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공급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의 세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급실적등”이라 한다)을 고려하여 설정한 한도액 범위에서 담보제공 없이 관세 등을 일괄납부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환급대상 수출등) ① (생략)

-----.

13. -----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법 제6조제1항-----

<삭제>

제3조(환급대상 수출등) ① (현행과 같음)

○ 인용조문 오류 정정

○ 별도 고시 제정에 따라 삭제

② 규칙 제2조제4항제1호의 선박 또는 항공기에는 외국군대의 군용선(기)을 포함한다. 다만, 외국 군용선(기)에 선(기)용품을 적재할 경우에는 세관장의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제3조의2(수출등의 사실확인) ① 규칙 제3조에 따라 수출등에 제공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등의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세관장으로부터 수출등의 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판매 또는 공사를 완료한 때 주무부장관 등으로부터 발급받은 납품완료증명서 또는 공사완료증명서 등의 서류를 환급 신청할 때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수출등의 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

- 1. ~ 3. (생략)
- 4. 규칙 제2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

② -----

----- . ----- 선박
(항공기)용품-----
-----.

제3조의2(수출등의 사실확인) ①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 4. -----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

급: 해당 선용품 또는 기용품을 외국무역선(기)에 공급하는 때

② 환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수출유형별 수출사실 확인방법 등”에 따른 수출사실 확인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환급등 신청인) ① 법 제12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급신청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간이징액환급률표를 적용한 환급신청등의 경우에는 제조자 [우리나라 안(「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지역을 포함한다)에서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임가공 위탁자를 말한다]가 신청하여야 한다.

-----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

② ----- 별표 1-----

제4조(환급등 신청인) ① -----

○ 조문 정비

1. ~ 4. (생략)

5. 제1호부터 제3의2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상속을 받은 경우 그 상속인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

② (생략)

③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환급신청인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환급신청인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관할지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서류는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 확인에 필요한 서류에 한정하며,

1. ~ 4. (현행과 같음)

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

② (현행과 같음)

③ -----

○ 인용조문 오류 정정

조제2항에 따라 관세등의 환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표 2의 “환급신청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된 별지 제3호서식의 환급신청서를 전자문서로 관세환급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9조(접수통지와 오류사항의 보완) ① 세관장은 환급신청 자료가 관세환급시스템에 입력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접수통지서를 환급신청인에게 전자문서로 통지한다.

1. ~ 4.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내용이 “오류통보” 또는 “서류제출대상 통지”인 경우, 환급신청인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급신청 자료를 정정하여 다시 전송하거나 환급신청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오류통보를 받은 때에는 환급신청 자

----- 별표 2 -----

-----.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접수통지와 오류사항의 보완) ① --

----- 접수통지서를 환급신청인-----
-----.

1. ~ 4. (현행과 같음)

② -----

-----.

1. -----

○ 띄어쓰기 오류 수정

○ 오류보완기간 명확화

료의 오류사항을 정정하여 당초의 제출번호 및 접수번호로 다시 전송하여야 한다.

2. (생략)

제10조(P/L통지된 환급신청의 처리) ① P/L통지된 환급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처리한다.

1. 별표 2의 “환급신청서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히 작성되었는지 여부

2. ~ 4. (생략)

② (생략)

제11조(서류제출대상 건의 제출서류) ①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서류제출대상으로 통지받은 환급신청인은 그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환급신청서 및 수출신고필증 등 수출사실 확인서류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산출력물 및 사본을 포함한다)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

----- 7일 이내에 다시 -----
-----.

2. (현행과 같음)

제10조(P/L통지된 환급신청의 처리) ① -----
-----.

1. 별표 2-----

2.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서류제출대상 건의 제출서류) ① -----

○ 조문 정비

여야 한다. 다만, 서류로 제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료저장매체 등에 해당 자료를 저장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소요량을 계산하여 환급신청하는 경우

가.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 서식의 소요량 계산서

나. (생략)

다. 별표 2의2의 “환급금 계산내역표(조건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환급금 계산내역표(조건표)

라. 별표 2의3의 “자재명세서(BOM)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자재명세서(BOM)

마. 소요량 산정에 관련된 증빙서류(제1

-. -----

--.

1. -----

가. -----
----- 별지 제2호서식 -----

나. (현행과 같음)

다. 별표 2의2 -----

----- 환급금 계산내역표(조건표)

라. 별표 2의3 -----

마. ----- 제

○ 띄어쓰기 오류 수정

○ 문장부호 및 조문 정비

○ 조문 정비

○ 띄어쓰기 오류 수정

0조의2 제4호의 경우에 한한다)

2. 영 제16조에 따른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여 환급신청하는 경우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소기업부장이 발행한 중소기업확인서

나. (생략)

3. (생략)

②·③ (생략)

제12조(서류제출대상 건의 처리) ① 세관장은 서류제출대상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환급금 지급을 결정한다.

1.·2. (생략)

3. 별표 1의 “수출유형별 수출사실 확인 방법 등”에 따라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4. (생략)

10조의2제4호-----

2. -----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나.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서류제출대상 건의 처리) ① -----

-.

1.·2. (현행과 같음)

3. 별표 1-----

4. (현행과 같음)

○ 인용조문 오류 정정

○ 조문 정비

②·③ (생략)

제15조의4(신청금액 계산) 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지급신청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후 원단위를 절사하되, 법 제21조에 따라 징수하거나 자진신고·납부한 가산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A: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징수하거나 법 제21제4항에 따라 자진신고·납부한 과다환급금

B: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징수하거나 법 제21제5항에 따라 자진신고·납부한 가산금액

제15조의5(가산금액 지급신청) ① 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가산금액을 지급신청하려는 자는 별표 2의4의 “가산금액 지급신청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된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가산금액 지급신청서를 전자문서로 관세환급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의4(신청금액 계산) -----

----- 10원 미만의 끝수는 버리되-----
-----.

법 제21조제4항에 -----

법 제21조제5항에 -----

제15조의5(가산금액 지급신청) ① -----

----- 별표 2의4-----

-----.

○ 조문 정비

○ 조문 오탈자 수정

○ 조문 오탈자 수정

○ 조문 정비

② ~ ⑤ (생략)

제16조(환급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금융기관 등) 환급금을 지급 받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금융기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은행법」 제2조제2호 및 제5조에서 정한 금융기관(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을 제외한다)

2. ~ 4. (생략)

제19조(환급금의 체납충당) ① 세관장은 환급신청인이 관세등의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환급금을 체납액에 즉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법 시행령」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후 10일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 세관장이 납세고지한 것으로 보세구역으로부터 해당 물품이 반출되지 않은 체납은 제외한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6조(환급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금융기관 등) -----

-----.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금융기관(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을 제외한다)

2. ~ 4. (현행과 같음)

제19조(환급금의 체납충당) ① -----

-----.
----- 납부고지한 -----

-----.

○ 인용조문 오류 정정

○ 조문 정비

② (생략)

제20조(환급결정일부터 1년이 경과된 환급금의 지급절차) ① 영 제23조제3항에 따라 세입금계정에 편입된 환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환급금 지급신청서로 환급금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급금지급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해당 별지 제9호서식의 환급금 지급신청서를 확인하여 환급결정하고 「관세법」 제46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21조(세관장 소관 세입금계정간의 조정)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체요청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세관장 소관 세입금계정간 이체요청서로 한다.

②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이체요청지시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세관장 소관 세입금계정간 이체요청 지시서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환급결정일부터 1년이 경과된 환급금의 지급절차) ① -----

환급금 지급신청-----.

② ----- 환급금 지급신청-----

----- 환급금을 결정-----
-----.

제21조(세관장 소관 세입금계정간의 조정)

① ----- 이체 요청은 -----
----- 소관세입금계정간 이체 요청-----.

② ----- 이체 요청 지시-----
----- 소관세입금계정간 이체 요청 지시-----.

○ 띄어쓰기 오류 수정

○ 띄어쓰기 오류 및 조문 정비

○ 띄어쓰기 오류 및 조문 정비

○ 띄어쓰기 오류 및 조문 정비

③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이체요구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세관장 소관 세입금 계정간 이체요구서로 한다.

④ 영 제22조제4항에 따른 이체필통지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세관장 소관 세입금계정간 이체필통지서로 한다.

제22조(추가환급신청 대상) ① 영 제18조 제3항 단서와 제7조 단서에 따라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괄하여 환급신청 하였으나 세관장의 착오로 일부 환급금이 부족하게 지급된 경우

2. 3. (생략)

4. 환급신청인의 착오로 소요원재료와 규격이 상이한 원재료로 환급받는 등의 사유로 해당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이 추징되고 정당한 원재료로 추가환급신청하는 경우

③ -----
----- 소관세입금계정간 이체 요구-----.

④ -----
----- 소관세입금계정간 이체필 통지-----.

제22조(추가환급신청 대상) ① -----

-----.

1. ----- 환급신청을 -----

2. 3. (현행과 같음)

4. -----

----- 추가환급신청을 하는 -----

○ 띄어쓰기 오류 및 조문 정비

○ 띄어쓰기 오류 및 조문 정비

○ 조문 정비

○ 띄어쓰기 오류 및 조문 정비

5. ~ 6. (생략)

7. 품목분류나 세율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8조에 따라 신고수리전반출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환급이 결정된 후에 품목분류나 세율결정이 된 경우

8. (생략)

② (생략)

제25조(자진신고 시 제출서류) ① (생략)

② 제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서류는 전자첨부로 제출할 수 없다.

제31조(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대상) ① 간이정액환급률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규칙 제12조에서 정한 자가 생산하는 수출물품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수출물품의 수출자와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다른 경우

5. ~ 6. (현행과 같음)

7. -----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8조-----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자진신고 시 제출서류) ① (현행과 같음)

<삭제>

제31조(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대상) ①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 띄어쓰기 오류 수정

○ 과다환급금 자진신고 시 제출서류 전자첨부 허용(제도개선 반영)

○ 인용조문 오류 정정

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생략)

제32조(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 및 비적용 승인) ① 규칙 제1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자가 환급을 신청하거나 기납증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처음 수출한 날 또는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한 날부터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② 간이정액환급률표는 환급신청인이 간이정액환급률의 적용승인을 받은 이후 수출(법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판매 또는 공사, 공급을 포함한다)하거나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 (생략)

④ 제3항에 따라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 및 비적용 승인) ① -----

간이정액환급률표의 -----

-----.

② -----
간이정액환급률표의 -----

-----.

③ (현행과 같음)

④ ----- 간이정액환급률표의 비

○ 조문명 띄어쓰기 오류 수정 및 용어 통일

○ 용어 통일

○ 용어 통일

승인을 받은 자가 다시 간이정액환급률 표의 적용을 받으려는 때에는 관할지세 관장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간이정액 환급 (적용·비적용) 승인신청서를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또는 적용 승인신청을 받은 세관 장은 영 제14조제6항에 따른 2년이 경과 되었는지 여부를 관세환급시스템에서 조회한 후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⑥ (생략)

⑦ 간이정액환급 적용 또는 비적용 승인을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환급금 계좌(신규· 변경) 통보서에 기존 간이정액환급 적용 또는 비적용 승계여부를 기재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1. 2. (생략)

적용승인-----

-----.

⑤ ----- 간이정액환급률표의
----- 적용승인 신청-----

-----.

⑥ (현행과 같음)

⑦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 또는 비적 용승인을 받은 자가-----

-----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 또는 비적용승인 승계 여부-----
-----.

1. 2. (현행과 같음)

○ 띄어쓰기 오류 수정 및 용어 통일

○ 띄어쓰기 오류 수정 및 용어 통일

제33조(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 제외물 품)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간이정액 환급률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제32조제5항에 따라 비적용 승인을 받은 자가 제조·가공한 수출물품 또는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공급한 물품

3. ~ 7. (생략)

제35조(대상업체 요건 및 지정) ①·② (생략)

③ 관할지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자동간이 환급업체로 지정한 후 이를 해당 업체에 통지하고 관세환급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생략)

2. 중소기업청장이 발행한 중소기업확인

제33조(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 제외물 품) -----

-----.

1. (현행과 같음)

2. ----- 비적용승인-----

3. ~ 7. (현행과 같음)

제35조(대상업체 요건 및 지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현행과 같음)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띄어쓰기 오류 수정

○ 용어 오류 수정

서 등에 의한 규칙 제12조에 해당하는
중소업체인지 여부

④ (생략)

제36조(자동간이 환급신청사항의 기재방법) ① 제35조제3항에 따라 자동간이 환급업체로 지정받은 자가 자동간이 환급을 받으려는 대상품목을 수출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서 26번 항목(간이환급)에 “AD”라고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신설>

④ (현행과 같음)

제36조(자동간이 환급신청사항의 기재방법) ① -----

----- 다음 각 호에 따라 -----

-.

1.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으로 수출신고를 하는 경우: 수출신고서 26번 항목(간이환급)에 “AD”라고 기재

2.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의2호서식으로 (간이)수출신고를 하는 경우: (간이)수출신고서 품명·규격의 15번 항목(간이환급)별로 “AD(자동간이환급으로 처리하지 아니

○ 간이수출신고서 환급신청 방법
확대(자동간이환급신청 가능)

○ 간이수출신고서 환급신청 방법
확대(자동간이환급신청 가능)

작성한다. 다만, 별지 제17호서식의 자동환급업체(품목) 지정(취소) 신청(통보)서로 신청한 자동간이 환급금 지급 시기가 월 또는 분기인 경우에는 자동간이 환급금 지급시기가 종료한 날의 다음 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의 전월 또는 전분기 동안 선(기)적 된 수출물품에 대하여 관세환급시스템이 업체별 수출물품 품목번호(HSK 10 단위)별로 환급신청서를 작성한다.

2. 제1호에 따라 작성된 환급신청서는 관세환급시스템이 접수하여 이를 심사한 후 환급금을 결정한다.

3. ~ 5. (생략)

제38조(자동간이 환급업체의 변경사항 신고 및 지정취소) ① 제35조제3항에 따라 지정 받은 자동간이 환급업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자동간이 환급업체(품목) 지정(변경·취소) -----

2. -----
-----으로 접수하고 세관장은-----

3. ~ 5. (현행과 같음)

제38조(자동간이 환급업체의 변경사항 신고 및 지정취소) ① -----

○ 조문 정비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받은 내용 및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지정 취소한 내용을 해당업체에 통지하고 이를 관세환급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3호에 따른 비적용 승인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는 비적용 승인일부터 자동간이 환급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0조(평세증 발급대상물품의 지정) ① (생략)

②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평세증 발급대상물품의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평균세액증명서 발급대상물품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생략)
2. 별지 제20호서식의 수출물품별 소요 원재료의 내역
3. (생략)

④ -----
----- 지정취소한

-----.

⑤ ----- 비적용승인을 --
----- 비적용승인일-----
-----.

제40조(평세증 발급대상물품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 소요
원재료 -----
3. (현행과 같음)

○ 띄어쓰기 오류 수정

○ 띄어쓰기 오류 수정

○ 조문 정비

③ (생략)

제41조(평세증의 신청 및 제출서류) ①·

② (생략)

③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평세증 발급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표 3의 “평균세액 증명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전자문서를 전송하고 접수통지를 받아 접수번호가 기재된 평세증을 접수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 제3항에 따라 평세증을 발급신청할 때 평균세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출용원재료의 소요량산출이 단위당 중량·두께·폭·농도 등에 따라 비례 계산 하여야 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발급물량을 조정·계산하고 평세증 해당란에 “비례계산”이라 기재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41조(평세증의 신청 및 제출서류)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 별표 3 -----

--- 관세환급시스템에 전송 -----

-----.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 소요량 산출 -----

-----.

○ 조문 정비

○ 띄어쓰기 오류 수정

2. (생략)

제42조(평세증의 추가발급) ① (생략)

②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평세증의 추가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표 3의 “평균세액증명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23호서식의 평균세액증명서에 추가발급신청사유서를 첨부하여 당초에 평세증을 발급한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서류는 세관장이 직접 확인한다.

1. ~ 2. (생략)

제47조(기납증발급신청 및 제출서류) ①

제46조에 따른 기납증 발급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표 4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전자문서를 전송하고 접수통지를 받아 접수번호가 기재된 기납증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2. (현행과 같음)

제42조(평세증의 추가발급) ① (현행과 같음)

② -----
----- 별표 3 -----

-----.

1. ~ 2. (현행과 같음)

제47조(기납증발급신청 및 제출서류) ①

----- 별표 4 -----

----- 관세환급시스템에 전송 -----

○ 조문 정비

○ 조문 정비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로 제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료저장매체 등에 해당 자료를 저장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관계서류는 제48조의 국내거래 인정서류 및 제49조의 양도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소요량을 계산하여 기납증 발급신청하는 경우

가.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 서식의 소요량 계산서

나. (생략)

다. 별표 2의2의 “환급금 계산내역표(조건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환급금 계산내역표(조건표)

-----.

② -----

-----.

1. -----

가.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소요량계산서

나. (현행과 같음)

다. 별표 2의2-----

----- 환급금 계산내역표-----

○ 문장부호 및 띄어쓰기 오류 수정

○ 조문 정비 및 띄어쓰기 오류 수정

라. 별표 2의3의 “자재명세서(BOM)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자재명세서(BOM)

마. 소요량산정에 관련된 증빙서류(제50조에 따른 서류제출인 경우에 한한다)

2. 영 제16조에 따른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여 기납증 발급신청하는 경우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소기업부장관이 발행한 중소기업확인서

나. (생략)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전송된 전자 문서내용과 제출된 서류를 대조·확인하고 수출환급훈령 제9조를 준용하여 증명세액의 정확성 여부를 심사한 후 기납증을 발급한다.

④·⑤ (생략)

라. 별표 2의3-----

마. 소요량 산정-----

2. -----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나. (현행과 같음)

③ ----- 전자 문서 내용-----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제9조-----
-----.

④·⑤ (현행과 같음)

○ 조문 정비

○ 띄어쓰기 오류 수정

○ 인용조문 오류 정정

○ 인용조문 오류 정정 및 띄어쓰기 오류 수정

부터 받고 물품은 해외구매자가 지정한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경우로서 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와 물품을 인도 받는 자가 기재된 것. 다만, 수출계약서의 경우에는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여 물품인도사실이 확인되고 인도물품이 수출등에 제공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생략)

제49조(국내거래물품의 양도일자) 제48조 및 제55조에서 정한 서류로 거래된 물품의 양도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확인한다.

1. ~ 3. (생략)

제50조(환급전심사물품에 대한 기납증의 발급) ① 규칙 제13조제1항 각 호에 규정한 업체 또는 물품에 대하여 기납증을 발급하려면 제47조에서 정한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또는 심사하

4. (현행과 같음)

제49조(국내거래물품의 양도일자) -----

--- 양도일자-----
-----.

1. ~ 3. (현행과 같음)

제50조(환급 전 심사물품에 대한 기납증의 발급) ① 세관장은 규칙 제13-----

○ 띄어쓰기 오류 수정

○ 조문명 띄어쓰기 등 조문 정비

고 기납증을 발급한다.

1. 소요량 계산서류에 의한 소요원재료 및 소요량계산의 적정여부

2. 소요량 계산서류와 소요원재료 납부 세액확인서류에 의한 증명할 세액계산의 정확여부

② 기납증을 발급한 후 신청서 및 소요량 계산서류를 제외한 제출받은 서류는 신청인에게 되돌려 준다.

제51조(동일업체의 제조장 간 공급물품 등에 대한 기납증 발급)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당물품을 공급하는 자가 기납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계약관계서류 등 해당물품의 이전의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와 해당물품의 입출고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해당내역을 확인한 후 제47조를 준용하여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다.

-----.

1. -----
- 소요량 계산-----

2. ----- 납부 세액 확인서류-----

② 세관장은 기납증-----

-----.

제51조(동일업체의 제조장 간 공급물품 등에 대한 기납증 발급) ① -----

-----.

○ 띄어쓰기 오류 수정

○ 띄어쓰기 오류 수정

○ 조문 정비

1. 제조장별로 환급신청하는 업체로서 동일업체 제조장 간 공급물품에 대하여 기납증의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수출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중간원재료를 위탁생산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수입원재료 또는 중간원재료의 제조·가공 물품에 대하여 기납증의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기납증을 발급한 경우 법 제9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양도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가 최초로 수입(구매를 포함한다)된 날을 영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본다.

제52조(해외임가공 후 수입물품의 국내거래시 기납증 발급)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기납증을 발급한 경우

1. -----

-----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

2. -----

-----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

② ----- 경우 -----
에는 -----
-----.

-----.

제52조(해외임가공 후 수입물품의 국내거래시 기납증 발급) ① (현행과 같음)

② -----

○ 조문 정비

○ 조문 정비

○ 띄어쓰기 오류 수정

법 제9조제2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양도물품이 재수입된 날을 영 제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로 본다. 다만, 해외임가공 후 수입된 물품이 하나의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2회 이상 분할 공급된 경우, 최초 해외임가공 물품이 수입된 날 모두 수입된 것으로 보아 1건의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53조(분증의 발급대상) 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분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생략)
2. 평세분증은 평세증이 발급된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제1호와 같이 양도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수입원재료만으로 평세증이 발급

----- 각 호 -----

-----.

제53조(분증의 발급대상) -----

-----.

1. (현행과 같음)
2. -----

가. -----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된 경우에는 수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초일부터 2년 이내에 거래된 경우

나. 국내생산원재료 또는 수입원재료와 국내생산원재료를 일괄하여 평세증이 발급된 경우에는 매입(수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초일부터 1년 이내에 거래된 경우

3. (생략)

제54조(분증의 발급신청 및 제출서류)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분증발급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표 5의 “분할증명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전자문서를 전송하고 접수통지를 받아 접수번호를 기재한 별지 제26호서식의 분할증명서를 접수통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전송된 전자

--- 첫날-----

나. -----

----- 첫날부터

1년 이내-----

3. (현행과 같음)

제54조(분증의 발급신청 및 제출서류) ① (현행과 같음)

② -----

----- 별표 5-----

----- 관세환급시스템에 전송-----

③ ----- 전자

반영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

○ 조문 정비

○ 조문 정비

문서내용과 제출된 서류를 대조·확인하고 분할증명세액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한 후 분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분증을 발급한 후 제1항의 서류는 신청인에게 되돌려 준다.

④·⑤ (생략)

제55조(분증 발급에 따른 국내거래 인정서류) 제53조에서 정한 물품에 대한 국내거래 인정서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같다.

1.·2. (생략)

3. 구매확인서(제1호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것)

4. ~ 7. (생략)

제56조(동일업체의 제조장간 공급물품등에 대한 분증 발급) ① 세관장은 다음

문서의 내용-----

-----.

④·⑤ (현행과 같음)

제55조(분증 발급에 따른 국내거래 인정서류) -----

-----.

1.·2. (현행과 같음)

3. 구매확인서(「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91조제11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나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제1호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한 것)

4. ~ 7. (현행과 같음)

제56조(동일업체의 제조장간 공급물품등에 대한 분증 발급) ① -----

○ 국내거래 인정서류 규정 정비 (국민제안 반영)

제57조(P/L발급업체 등 지정) ① 세관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P/L발급업체 또는 P/L발급관세사”라 한다)에게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기납증·분증·평세증(이하 이 절에서 “기납증등”이라 한다)을 발급하게 할 수 있다.

1. 제81조에 따른 신용담보업체 지정요건을 갖춘 업체
2.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8조의2에 따라 외국인투자 또는 출자의 신고를 한 자)
3. (생략)
4. 「관세사법」 제10조에 따라 세관장에게 개업신고를 한 관세사
5.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제57조(P/L발급업체 등 지정) ① -----

-----.

<삭제>

2.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 신고를 한 자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외국인투자 허가를 받은 자)
3. (현행과 같음)
4. 「관세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을 마치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자
5. -----

- 별도 고시 제정 등에 따른 삭제
- 인용조문 오류 정정
- 인용조문 오류 정정 및 띄어쓰기 오류 수정
- 인용조문 오류 정정

서류에 의하여 기납증 등의 적정발급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1조제2항, 제47조제2항 및 제54조제1항의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기납증등을 발급하게 할 수 있다.

제59조(기납증등의 P/L발급) ① P/L발급업체 또는 P/L발급관세사로 지정을 받은 자가 제58조에서 정한 기납증등을 P/L발급하려면 별표 3부터 별표 5까지의 기납증등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전자문서를 전송하고 관세환급시스템에서 통지하는 바에 따라 기납증등을 발급한다.

② P/L발급업체 또는 P/L발급관세사가 기납증등을 P/L발급하는 때에는 발급하는 기납증등에 별표 6의 “P/L발급 증명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47조제5항 및 제54조제5항에 따른 제증명전자문서 전송업체의 경우에는 증명인 날인

----- 세관장은 P/L발급업체 또는 P/L발급관세사로부터 제41조제2항----- 후 P/L발급업체 또는 P/L발급관세사가 -----.

제59조(기납증등의 P/L발급) ① -----

----- 관세환급시스템에 전송-----

② -----

----- 별표 6의 P/L발급업체 등이 제증명서 발급 시 날인하는 증명인 -----

○ 조문 정비

○ 문장부호 정비

을 생략하고 전자문서에 의하여 기납증등을 발급할 수 있다.

③ P/L발급관세사는 제1항에 따라 기납증등을 발급한 후에는 기납증등 발급신청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서류 중 신청서 및 소요량 계산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는 신청업체에게 되돌려 준다.

제60조(제증명서의 정정·취하)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정정·취하를 승인한 세관장은 정정·취하사항을 관세환급시스템에 등록한 후 별표 7의 “제증명서 발급 시 날인하는 증명인”을 날인하여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평세증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조정하여 정정한다.

1. ~ 2. (생략)

-----.

③ -----
----- 발급 신청업체-----

-----.

제60조(제증명서의 정정·취하) ① (현행과 같음)

② -----

----- 별표 7의 제증명서 발급 시 날인하는 증명인-----

-----.

1. ~ 2. (현행과 같음)

○ 띄어쓰기 오류 수정

○ 조문 정비

③ 제1항에 따라 정정·취하 승인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해당 기납증등의 환급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정정·취하에 따라 환급액의 감소가 발생하는 경우 환급에 사용된 금액을 추징한 후에 정정 또는 취하하여야 한다.

④ ~ ⑥ (생략)

제61조(반입확인 신청 및 제출서류) ① 법 제4조제3호 및 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보세구역 등과 자유무역지역에 환급대상 수출물품을 반입하고 반입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는 자는 물품을 해당 보세구역 등과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는 즉시 별표 8의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신청)서 작성요령”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 신청자료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내 공항만감시시스템(이하 “공항만시스템”이라 한다)에 전송하여야 하며, 접수통보를 받은 날부터 3일

③ -----

----- 경우에는 -----
----- 기납증등을 정정 또는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61조(반입확인 신청 및 제출서류) ① -

별표 8-----

○ 조문 정비

○ 조문 정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환급대상수출 물품 반입(적재)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반입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2조에 따른 접수통지를 받을 때 처리기준이 즉시심사인 경우에는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생략)

2. 구매확인서

3. ~ 5. (생략)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전송한 자료에 대하여 오류통보를 받은 경우 오류사항을 정정한 후 당초 제출번호로 다시 전송하여야 한다.

----- 별지 제1호서식에

1. (현행과 같음)

2. 구매확인서(「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91조제11항에 따라 외국 환은행의 장이나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제1호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한 것)

3. ~ 5. (현행과 같음)

② -----
----- 후 7일 이내에 -----
-----.

○ 국내거래 인정서류 규정 정비 (국민제안 반영)

○ 오류보완기간 명확화

1. ~ 5. (생략)

② 세관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보세공장에서 사용하는 원재료의 품목 번호(HSK)가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제4항에 따라 등록되어 있고 반입확인신청서에 보세공장의 구매 주문서(Purchase Order)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입확인 신청물품에 대한 심사를 생략하고 제65조에 따라 확인일자 등을 전산등록하고 신청인에게 전산으로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5호의 서류제출심사나 63조제1항의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경우에는 제61조 또는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른다.

제64조(검사결과 조치 및 보완요구) ① 세관장은 제63조에 따른 검사결과 반입물품이 신청내역과 상이한 경우에는 직권 오류 조치하거나 또는 보완할 내용 및 보완기간(7일 범위 내)을 기재하여 신청

1. ~ 5. (현행과 같음)

② -----

-----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제6항-----
--- 반입확인서 30번 항목(구매주문서 번호)-----

----- 제63조제1항-----

-----.

제64조(검사결과 조치 및 보완요구) ① --

○ 인용조문 오류 정정 등

○ 조문 정비

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보완요구서로 보완요구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65조(발급내역 전산등록·확인서 교부 및 통보) ① 반입대상물품에 대한 검사(심사)가 완료되면 확인일자 등을 전산등록하고 신청인에게 전산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입확인서를 양수자에게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제증명 전자문서 전송업체(신규·변경) 통보서를 발급신청 전까지 관할지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세관장은 공항만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반입확인 신청인은 즉시심사하는 건에 대하여 공항만시스템으로부터 확인내역을 통보받아 통보된 내용과 일치하

보완요구를 하여야 -----.

② (현행과 같음)

제65조(발급내역 전산등록·확인서 교부 및 통보) ① 세관장은 반입확인대상 물품-----
-----.

② 세관장은 신청인-----
-----.

③ -----

-----.

○ 조문 정비

○ 조문 정비

○ 조문 정비

는지를 확인한 후 별표 9의 확인인을 날
인하여 반입확인서를 발급한다.

④ 세관장은 서류제출심사가 완료된 때
에는 확인신청서에 확인일자를 기재하
고 별표 10의 “세관담당자의 인장”을 날
인하여 확인서를 발급한다.

⑤ 보세구역 등에 환급대상 수출물품을
공급받은 자가 공급받은 물품과 확인서
내역이 서로 상이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
는 그 사실을 해당 확인서를 발급한 세
관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⑥ 세관장은 보세공장에서 건조되는 선
박에서 사용·소비할 시험운전용 유류
를 반입하는 경우에는 시험운전 종료 후
소요된 량을 제외한 확인대상 물량(잔존
유류)이 확정될 때에 물품반입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⑦ (생략)

⑧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 반입확인서 발급 시
날인하는 증명인-----.

④ ----- 반입확인서가 서류제출심사
대상인 경우로서 심사가----- 반입확인서
----- 별표 10의2의 세
관담당자 인장 ----- 반입확인서-----.

⑤ -----
----- 반입확
인서 내역-----
----- 반입확인서를 --
-----.

⑥ -----
----- 유류·
연료를 -----
----- 량을 ----- (잔존
유류·잔존연료)-----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⑦ (현행과 같음)

⑧ 세관장은 제3항-----

○ 조문 정비

○ 조문 정비

○ 환급대상 원재료 범위 확대
(유류가 아닌 잔존연료에도 환급
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 조문 정비

발급한 반입확인서는 양수자가 공항만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 내역을 공개한다.

제66조(적재허가 신청) 법 제4조제4호 및 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외국무역선(기)에 적재하는 선(기)용품 또는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한 적재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을 적재하기 전에 별표 8의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신청)서 작성요령”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 신청자료를 공항만시스템에 전송하고, 적재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선(기)용품을 적재하는 경우 선박(항공기)의 종류·선박톤수(총톤수 및 순톤수)·승무원수·항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반입확인서 -----

-----.

제66조(적재허가 신청) -----

----- 선박(항공기)용품 -----

----- 별표 8 -----

1. 선박(항공기)용품을 적재하는 경우: -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 등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

2. 원양어업용 물품을 적재하는 경우 해
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발급한 원양 어업
용 선용품 무상반출 확인서

3. 제67조제2항에 따른 적재허가서를 발
급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
하는 서류

가. (생 략)

나. 내항운항일지, 기관일지 및 기관
설계서 사본 등 내항운항기간 중
적재 및 소비된 유류의 양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4. (생 략)

제67조(적재허가신청서 심사 및 허가서 발
급) ① 적재허가신청서는 세관장이 신청
업체의 성실도·적재물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서류제출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업체 및
품목을 제외하고는 즉시심사 방법으로

2. ----- 경우: --

----- 원양어업
용 선박용품 무상반출 ---

3. -----

가. (현행과 같음)

나. -----

----- 유류·연료 -----

4. (현행과 같음)

제67조(적재허가신청서 심사 및 허가서 발
급) ① -----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

○ 환급대상 원재료 범위 확대
(유류가 아닌 잔존연료에도 환급
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 용어 정비

처리한다. 다만, 서류제출인 경우로서 보완요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3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환급신청인”은 “적재허가를 받으려는 자”로 본다.

② 외국무역선(기)이 내항선(기)으로 자격전환하여 내항 운항을 한 후 다시 외국무역선(기)으로 자격전환(내항선(기)이 외국무역선(기)으로 자격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 해당 선박에 남아 있는 유류에 대하여 적재허가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원상태 적재허가서는 외국무역선(기)이 내항선(기)으로 자격전환할 때의 과세 유류 중 내항 운항에 소비된 양을 제외한 잔존유류에 대하여만 발급할 수 있다.

③ 적재허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발급한다.

1. (생략)
2. 서류제출의 방법으로 허가된 경우: 세

----- “적재확인을 -----.

② -----

----- 선박(항공기)에 남아 있는 유류·연료에 대하여 적재확인서-----

----- 적재확인서-----

----- 유류·연료 중 -----
----- 잔존유류·잔존연료-----
-----.

③ -----
-----.

1. (현행과 같음)
2. -----

- 환급대상 원재료 범위 확대
(유류가 아닌 잔존연료에도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 용어 정비

- 조문 정비

정서(Survey report)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 4.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선장 또는 그 대리인의 적재확인을 받은 적재 확인서의 제출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기)용품 및 선(기)내 판매용품의 하역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 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적재완료 보고를 하고 적재확인서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기)용품의 적재확인서 교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적재허가받은 물품에 대한 적재사항을 확인한 후 적재일자 및 적재확인자를 전산등록하고 별표 10의 “세관담당자의 인장”을 날인하여 확인서를 교부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확인서는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다.

----.

1. ~ 4. (현행과 같음)

② -----

경우 적재확인서 신청인은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제14조, 「항공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
-----.

③ ----- 선박(항공기)용품-----

----- 별표 10의2의 세관담당자 인장--- 적재확인서를 -----
----- 적재확인서-----
-----.

○ 인용조문 오류 정정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

○ 조문 정비

제69조(검사결과 조치 및 보완요구)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 오류 조치하거나 또는 보완할 내용 및 보완기간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보완요구서로 보완요구 하여야 한다.

제70조(정정 및 취하) ①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신청)내용을 정정 또는 취하하려는 자는 별표 11의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 정정(취하) 신청서 작성요령”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 신청 자료를 공항만시스템에 전송하고, 당초 확인서 발급세관장에게 별지 제29호서식의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 정정(취하)승인(신청)서와 정정 또는 취하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9조(검사결과 조치 및 보완요구) ①
(현행과 같음)

② -----

----- 보완요구를 하여
야 --.

제70조(정정 및 취하) ① -----
-----(적재)확인 (신청)서의 내용-----
-----별표 11-----

-----반입(적재)확인서 발급 세관장-----

-----(취하) 승인(신청)서-----
-----.

○ 조문 정비

○ 조문 정비

② 세관장은 제1항 따라 정정·취하를 승인할 경우 해당 반입(적재)확인서가 환급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정정·취하로 인하여 환급금의 변동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환급금을 추징한 후에 정정·취하 승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정정·취하를 승인한 세관장은 정정·취하사항을 공항만시스템에 등록한 후 별표 10의 “승인인”과 “세관담당자의 인장”을 날인하여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④ 제65조제2항에 따라 양수자에게 전자문서로 통보된 반입확인서를 정정·취하 승인한 세관장은 정정·취하사항을 양수자에게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신청)서의 분실·도난 및 소실 등으로 재

② -----

----- 정정·취하를 승인-----
-----.

③ -----

----- 별표 10의 승인인과
별표 10의2의 세관담당자 인장-----
-----.

④ -----
----- 반입확인서의 정정·
취하를 -----
-----.

⑤ -----(적재) 확인
(신청)서-----

○ 조문 정비

○ 조문 정비

○ 조문 정비

○ 띄어쓰기 오류 수정

발급 받으려는 자는 해당 서류를 발급한
세관장에게 재발급사유서를 제출하고
재발급 받을 수 있다.

⑥ (생략)

제71조(대상업체의 지정)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보세공장등에 물품을
공급한 후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보세공장등을 관할하는 세관장에
게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제출하여 지
정을 받아야 한다.

1. 별지 제30호서식의 물품공급 후 반입
확인서 발급업체 지정(갱신)신청서

2. (생략)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지정기간을 2년으로 하여 지정하고
그 사실을 해당 업체에 통지하여야 한
다.

1. (생략)

-----.

⑥ (현행과 같음)

제71조(대상업체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물품공급후 -----
-----(갱신) 신청서

2. (현행과 같음)

③ ----- 지정 신청-----

-----.

1. (현행과 같음)

○ 띄어쓰기 오류 수정

○ 띄어쓰기 오류 수정

2. 규칙 제13조에 따른 환급전심사 대상
업체 또는 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3. 4. (생략)

④ 제3항에 따라 물품공급 후 반입확인
서 발급업체로 지정한 세관장은 그 지정
사실을 양수자가 공항만시스템에서 확
인할 수 있도록 내역을 공개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개 이상의 보
세공장등에 대하여 각 소재지 관할 세관
장에게 환급대상물품을 보세공장등에
공급 후 반입확인서 발급업체로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각 보세공장등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관
할지세관장에게 일괄하여 지정신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관할
지세관장은 제3항제1호와 제2호의 해당
사항을 검토하고, 이상이 없으면 제3항
제3호와 제4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 보세

2. ----- 환급 전 심사 -----

3. 4. (현행과 같음)

④ ----- 물품공급후 -----

-----.

⑤ -----
----- 물품공급후 -----

----- 경우에 신청인은 -----
----- 갖추어 신청인의
----- 지정 신청을 할
-----.

⑥ ----- 지정 신청 -----

○ 띄어쓰기 오류 수정

○ 띄어쓰기 오류 수정

○ 띄어쓰기 오류 수정

○ 띄어쓰기 오류 수정

공장등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검토를 요청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이상이 없는 경우 지정기간을 2년으로 하여 물품공급 후 반입확인서 발급업체로 지정 및 제4항에 따라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지정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2조(동일업체간 반복공급하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반입확인서 발급) ① 제71조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가 보세공장등에 공급한 수출용원재료에 대하여 반입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면 별표 8의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신청)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된 전자문서를 공항만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환급훈령 제24조제2항(서류제출심사 대상)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1조제1항에서 정한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 사실

제72조(동일업체간 반복공급하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반입확인서 발급) ① --
별표 8
다만,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 띄어쓰기 오류 및 인용조문 오류 정정

1. 신용장에 의하여 물품을 공급한 경우
에는 내국신용장 물품수령증 또는 양
수인이 발행한 물품인수증

2.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반입확인서는 해당 수
출용원재료를 공급한 날(내국신용장물
품수령증 또는 양수인이 발행한 인수증
상의 인수일)부터 10일 이내에 발급신청
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기간 공급물품
에 대하여 1건으로 일괄하여 반입확인
서를 발급 받으려면 다음 각 호에서 정
한 기한 내에 발급신청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일정기간동안 공급한 물품은 일괄
신청하는 날에 반입된 것으로 본다.

1.·2. (생략)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일괄하여 반입확
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제2항 본문에 따
라 반입건별로 반입확인서를 발급신청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일정기간이 경과

1. 내국신용장에 -----

2. (현행과 같음)

② -----
-----내국신용장 물
품수령증 -----

----- 일정기간동안 공급한 물품

-----.

1.·2. (현행과 같음)

③ -----

----- 반입 건별로 반입확인서를 발급신청
하러-----

○ 용어 정비

○ 띄어쓰기 오류 수정

○ 띄어쓰기 오류 수정

한 날의 다음 날 반입하는 물품부터 반입건별로 반입확인서를 발급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반입확인서의 발급 및 심사방법은 제61조, 제62조, 제65조 및 수출환급훈령 제24조를 준용한다.

제74조(지정기간 갱신 및 지정사항 변경)

① ~ ③ (생략)

④ 물품공급 후 반입확인서 발급업체는 업체명·통관고유부호 등 지정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의2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관할지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2. (생략)

⑤ (생략)

제75조(지정의 취소)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물품공급 후 반입확인서 발급업

----- 반
입 건별로 반입확인서를 발급신청할 --
----.

④ -----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제24조----.

제74조(지정기간 갱신 및 지정사항 변경)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물품공급후 -----

----- 별지 제30호의2
서식에-----

-----.

1.·2.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75조(지정의 취소) ① -----

----- 물품공급후 -----

○ 인용조문 오류 정정

○ 띄어쓰기 오류 수정

○ 띄어쓰기 오류 수정

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정받은 자(수출용 원재료를 공급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영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2. 3. (생략)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6조(용도의 사용신청 및 제출서류) ① (생략)

② 영 제26조에 따라 관세등을 환급받은 물품에 대한 용도의 사용·멸각승인 또는 멸실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환급받은 물품 용도의사용(멸각·멸실)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7조(용도의 사용승인) 제76조에 따라

-----.

1. -----수출용원재료-----

2. 3. (현행과 같음)

② ----- 따라 -----

-----.

제76조(용도의 사용신청 및 제출서류) ① (현행과 같음)

② -----
----- 사용·폐기승인 -----

-----(폐기·멸실)-----

-----.

제77조(용도의 사용승인) -----

○ 띄어쓰기 오류 수정

○ 조문 정비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용도의 사용(멸각·멸실)승인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그 사유를 검토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제78조(환급을 갈음하는 관세율 인하물품의 수입신고수리)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세율이 인하(이하 “환특세율”이라 한다)된 물품을 수입신고할 때에는 수입신고서의 세율란(50란)에 “환특”이라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환특세율을 적용한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할 때에 해당 수입신고필증 여백에 별표 12의 “환특세율 적용물품 확인 고무인”을 날인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79조(관세율 인하 전에 수입한 원재료의 재고신고) ①·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재고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즉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물품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폐기·멸실) 승인신청-----

-----.

제78조(환급을 갈음하는 관세율 인하물품의 수입신고수리) ① -----

수입신고서 50번 항목의 세율(구분)에 “환특”-----.

② -----

----- 별표 12의 인장-----
-----.

제79조(관세율 인하 전에 수입한 원재료의 재고신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반영

○ 조문 정비

○ 조문 정비

만, 업체의 재고관리사항 등을 고려하여 신고물품을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고물품이 수입원재료 상태인 경우에는 확인된 재고량을 수입신고필증등에 기재된 품명·규격·수량 및 관세액 등을 확인한다.

2. (생략)

3. 신고물품이 수출 또는 국내공급을 위하여 제조된 완제품인 경우에는 신고인이 작성한 소요량계산서를 징구하고 이를 제조하기 위하여 수입된 원재료의 품명·규격·수량 및 관세액 등을 제출된 수입신고필증등과 대조·확인한다.

4. (생략)

④ 세관장이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의 수입신

-----.

1. -----
----- 재고량과 -----

-----.

2. (현행과 같음)

3. -----

----- 소요량 계산서를 제출받고 -----

-----.

4. (현행과 같음)

④ -----

○ 조문 정비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

○ 조문 정비

고필증등의 여백 또는 이면에 별표 13의 “환급사용가능량 확인인”을 날인하고 확인된 수량과 금액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교부한다.

제7장 신용담보

제81조(신용담보업체의 지정요건) ① 법

제6조에 따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를 위한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최근 3년간 법 제23조 또는 「관세법」 제268조의2, 제269조, 제270조, 제270조2, 제271조, 제274조, 제275조의2, 제275조의3 및 제276조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자. 다만, 세관장이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최근 2년 이상 관세 등 제세의 체납이 없는 자. 다만, 「관세 등에 대한 담보

-----별표 13의
확인인 -----

-----.

<삭 제>

<삭 제>

- 별도 고시 제정에 따라 삭제
- 별도 고시 제정에 따라 삭제

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이하 “담보고시”라 한다) 제4조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수입실적, 수
출실적(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
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기초원재료납
세증명서의 공급실적서를 포함한다.
이하 “수출실적등”이라 한다), 환급실
적등이 있는 제조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이익이 발생
한 업체

나. 한국거래소에 일반종목으로 상장
된 법인. 다만, 관리종목 상장법인
은 제외한다.

다. 5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업체

② 제1항 각 호의 사실 확인에 관해서는
담보고시 제12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지세관장은 신용담보업체가 시설확장 등으로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동사업장에 대해서도 신용담보업체 자격에 따라 신용담보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제82조(신용담보업체의 지정 신청 등) ①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신용담보업체 지정 신청서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관할지세관장은 신용담보업체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정기간을 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하고, 제83조에 따라 신용담보한도액을 설정하여야 한다.

③ 관할지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신용담보업체를 지정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

<삭 제>

○ 별도 고시 제정에 따라 삭제

역을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록하고, 별지 제36호서식으로 신청인에게 지정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신용담보업체의 지정 신청자에게 다수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 단위로 지정신청을 하거나 주된 사무소에서 일괄하여 신청하되, 환급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그룹별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단위로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3조(신용담보한도액의 설정기준) ① 신용담보한도액은 별표 14의 신용담보액 설정기준에 따라 설정한다. 다만, 관할 지세관장은 해당 업체의 환급실적등의 증가로 최근 실적에 따라 신용담보한도액을 설정함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월의 전월(전산시스템에 의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전월)부터 이전 1년간의 환급실

<삭 제>

○ 별도 고시 제정에 따라 삭제

적등을 기초로 신용담보한도액을 설정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관세체납의 증감·세수의 추이와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별표 14에서 정한 신용담보한도액의 설정 또는 조정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82조제4항에 따라 각 사업장 단위로 신용담보업체의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에 환급실적등은 해당 법인의 전체 실적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신용담보한도액은 해당 사업장의 환급실적등을 기준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제84조(신용담보한도액의 조정) ①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받은 자가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환급실적이 현저하게 영향을 받아 제83조에 따라 이미 설정된 신용담보한도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신용담보한도액의 조정을 요청

<삭 제>

○ 별도 고시 제정에 따라 삭제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지세관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용담보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신규지정 및 기간갱신 승인시에는 그렇지 않다.

1. 최근 3개월(신청한 날이 속하는 월의 전월부터 이전 3개월. 다만, 전산시스템에 의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는 전전월부터 이전 3개월)동안 또는 전년도 어느 분기 동안의 환급실적등에 4를 곱한 금액을 적용하여 별표 14의 방법에 따라 한도액 조정

2. 제1호에 따른 조정 한도액으로도 부족한 경우 해당 업체의 시설개체 및 증설계획과 수출전망, 재무상태, 원자재 등의 수입가격 상승에 따른 납부세액 증가 및 수입물량 증가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130의 범위에서 증액 조정

② 관할지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신용

담보한도액을 조정할 때에는 즉시 그 내역을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록하고,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라 해당 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할지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증액 설정된 신용담보한도액의 사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해당 증액분을 전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제85조(신용담보사용의 일시정지 등) ①

관할지세관장은 신용담보업체가 「어음법」이나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 등의 사유로 관세채권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8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담보업체의 지정을 취소하기 전에도 신용담보의 사용을 일시 정지하고 담보고시에 따라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관할지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일시

<삭 제>

○ 별도 고시 제정에 따라 삭제

정지 사유가 해소되었음이 확인되면 일시정지 해제 처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은 즉시 일시정지 및 해제처리한 내역을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록하고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라 해당 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6조(신용담보업체 지정사항 변경신고

등) ① 신용담보업체는 대표자·주소·사업자등록번호 등 지정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영 제2조에 따른 일괄납부기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할지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관할지세관장은 신용담보지정업체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조건으로 신용담보지정업체를 인수·합병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인수·합병되는 신용담보지정업체의 자격과 환급실적을

<삭 제>

○ 별도 고시 제정에 따라 삭제

인수·합병하는 업체에 승계하여 신용
담보한도액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제8
1조의 신용담보업체 지정요건에 적합하
지 않은 업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자신의 수출입실적·환급실적등을
분리하여 분할업체에 승계하려는 신용
담보업체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에 따
라 분할업체를 신용담보업체로 지정하
고, 분할업체의 관할 세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신용담보
업체 지정사항 변경신고 수리서를 즉시
분할업체의 관할지세관장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1. 분할업체의 지정요건 적정 확인

2. 모기업 실적이 감액 조정되는 경우
모기업의 지정요건 적정 확인

3. 승계하는 실적분에 의하여 제83조제1

항을 준용하여 신용담보한도액을 설정
하고 지정기간은 2년으로 등록

4. 분할업체에게 승계한 실적분 및 신용
담보한도액만큼 모기업의 실적 등 및
신용담보한도액에서 감액 조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사항 변경신고를 받거나 모기업으
로부터 분할·분할합병된 분할업체의
관할세관이 변경되었음을 통보 받은 관
할지세관장은 이를 확인하여 변동사항
을 전산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신
고사항 중 상호의 변경 또는 기업의 합
병 등으로 해당 업체가 변경 전의 업체
를 승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변경 전 업체가 일괄납부하여야 할
관세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96조를 준
용하여 정산처리한다.

2. 변경 전 업체를 전산시스템의 신용담

보업체지정내역에서 삭제 등록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미 제공된 담보액이 인계
·인수될 때까지 그 삭제를 유예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일괄납부기간을 변경
하려는 자는 영 제6조에 따라 정산을 완
료하고 정산하는 달의 말일까지 변경신
고하여야 한다.

제87조(신용담보업체의 지정취소) ① 관할
지세관장은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받은
자가 제81조제1항제1호·제2호의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영 제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통관지세관장은 신용담보업체가 제8
1조제1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
식에 따라 즉시 관할지세관장에게 통지

<삭 제>

○ 별도 고시 제정에 따라 삭제

하여야 한다.

③ 관할지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신용
담보업체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역을 즉시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
록하고,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해당
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8조(신용담보업체 지정기간갱신 등) ①

신용담보업체는 지정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별지 제34호서식의 신용담보업
체 기간갱신 신청서에 세관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갱신신청을 받은 관할
지세관장은 이를 심사하여 제83조에 따
라 신용담보한도액을 설정하고, 직전 지
정기간 만료일의 다음 일부터 2년이 되
는 달의 말일까지로 지정기간을 정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기간갱신을 승인한 관

<삭 제>

○ 별도 고시 제정에 따라 삭제

할지세관장은 즉시 그 내역을 국가관세 종합정보망에 등록하고,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라 해당 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9조(신용담보업체의 담보사용 신청 등)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된 자가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의 용도로 담보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서의 징수형태란에 담보사용에 관한 부호를 기재하는 것으로 신용담보 사용신청을 갈음한다.

제90조(신용담보의 사용승인 및 전산관리)

- ① 제89조에 따라 신용담보업체로부터 담보의 사용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해당 신청액이 신용담보한도잔액 범위 내인 때에는 해당 수입신고를 수리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담보사용이 승인되거나 관세 등 제세의 수납 등이 종료된 경

<삭 제>

<삭 제>

○ 별도 고시 제정에 따라 삭제

○ 별도 고시 제정에 따라 삭제

우 다음과 같이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한다.

1.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신용담보한도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다.

가. 제1항에 따라 담보사용이 승인된 경우 그 승인금액

나.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산결과 관세 등이 환급된 경우 그 환급금액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의 용도에 담보를 사용한 자가 환급신청하여 그 금액이 지급보류된 경우 그 지급보류금액 및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산결과 해당 관세 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금액을 신용담보한도액에 가산한다.

제8장 일괄납부

제91조(관세 등의 일괄납부제한) 다음 각

<삭 제>

<삭 제>

○ 별도 고시 제정에 따라 삭제

○ 별도 고시 제정에 따라 삭제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일괄
납부를 승인할 수 없다.

1. 「관세법」 제51조부터 제68조까지,

제72조, 제74조에 따른 세율적용 물품

2. 「관세법」 제39조에 따른 부과지

대상물품

3. 「관세법」 제252조에 따른 신고수리

전 반출물품

4. 법 제17조에 따른 환급 등이 제한되

는 물품

5. 법 제19조에 따른 환급에 갈음하는

관세 등의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

제92조(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

괄납부신청) ①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

세 등을 일괄납부하려는 자는 해당 수입

신고서에 수입신고서 작성요령에서 정

한 일괄납부 부호를 기재하여 수입신고

함으로써 일괄납부신청에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된 수출용원

<삭 제>

○ 별도 고시 제정에 따라 삭제

재료에 대한 관세 등은 해당 수입신고건이 수리되면 일괄납부가 승인된 것으로 본다.

제93조(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기간) ①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기간은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반기로 할 수 있다.

② 관할지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일괄납부기간을 4개월 또는 반기로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일괄납부기간을 4개월로 하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

2. 일괄납부기간을 반기로 하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자의 수출물품 또는 내국신용장등에 의한 국내공급물품의 생산기간이 3개월 이상

<삭 제>

○ 별도 고시 제정에 따라 삭제

소요되는지를 확인

③ 관할지세관장은 제2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괄납부업체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94조(일괄납부승인한 세액의 변동시 조치) 통관지세관장은 제92조제2항에 따라 일괄납부를 승인한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관세 등과 부가가치세 등의 세액변동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1. 관세 등을 일괄납부승인한 해당 수입신고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의 납부 전후를 기준으로 정정과 보정을 구분한다.

2. 법 제7조에 따른 정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정 및 보정에 의하여 변경된 세액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처리한다.

가. 부가가치세 납부 이전이고 해당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법 제7조에

<삭 제>

○ 별도 고시 제정에 따라 삭제

따른 정산일 이전인 경우 : 관세 등
에 대하여는 일괄 납부승인한 세액
에 가감처리하고 부가가치세에 대
하여는 해당 세액을 정정

나. 부가가치세 납부 전이나 해당 수
입신고건에 대하여 법 제7조에 따
른 정산이 완료된 경우 : 정정에 의
해 변경된 세액 중 관세 등은 징수
또는 과오납환급을 하고 부가가치
세는 해당 세액을 정정

다. 부가가치세 납부 후이나 해당 수
입신고건에 대하여 법 제7조에 따
른 정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보정에 의하여 변경된 세액 중 관
세 등은 일괄납부승인한 세액에 가
감처리하고 부가가치세는 징수 또
는 과오납환급

라. 부가가치세 납부 후이고 해당 수
입신고건에 대하여 법 제7조에 따

른 정산이 완료된 경우 : 보정에 의
하여 변경된 관세 등과 부가가치세
에 대하여 징수 또는 환급

3. 「관세법」 제38조의3제1항 및 제3항
에 따라 수정신고 및 세관장이 경정처
분하는 경우 해당 세액에 대하여는 제
2호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95조(일괄납부업체의 관할지세관 변경
신고 등)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관세
등을 일괄납부하고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관할지세관이 변경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전 세관장에
게 별지 제43호서식의 관할지세관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업합병 등으로 새로운 업체로 변경
되는 경우
2. 주소이전으로 관할지세관이 변경되는
경우
3. 주된 사무소에서 환급신청을 하는 자

<삭 제>

○ 별도 고시 제정에 따라 삭제

가 각 사업장별로 환급신청하려는 경우

4. 사업장별로 환급신청을 하는 자가 주된 사무소에서 각 사업장의 수출물품에 대하여 일괄환급신청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관할지세관 변경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해당 업체가 일괄납부 중에 있는 관세 등에 대하여 정산처리하고 관할지세관 변경내역을 변경후 관할지세관장에게 통보하되, 신용담보업체가 관할지세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내역을 전산시스템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할지세관이 변경된 포괄담보제공업체는 담보고시 제31조제2항을 준용하여 제공된 담보를 해제하고 변경 후 관할지세관장에게 담보고시 제25조에 따른 포괄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관할지세관이 변경된

신용담보업체는 변경 후 관할지세관장에 제82조에 따라 신용담보업체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96조(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과 환

급액의 정산) ① 관할지세관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서 정산을 완료하고 영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산결과를 일괄납부기간이 종료되는 달의 다음 달 1일까지 일괄납부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결과 지급하여야 할 환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즉시 지급하고, 정산결과 징수하여야 할 관세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일괄납부기간이 종료되는 달의 다음 달 1일까지 일괄납부업체에게 납세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산결과 통지 및 제2항에 따른 납세고지는 법 제15조제1항의 전자송달에 의한다.

<삭 제>

○ 별도 고시 제정에 따라 삭제

④ 제3항의 전자송달은 제82조제1항에 의한 신용담보업체 지정 신청 시 일괄납부업체가 신청서에 기재한 사서함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하며, 신청서에 사서함 부호를 기재하는 것으로 「관세법」 제327조제6항에 따른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97조(직권정산절차) ① 관할지세관장이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직권정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 직권정산사유 발생통지를 하고 정산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직권정산한 세관장은 직권정산결과를 전산시스템에서 출력하여 해당 업체에 이를 송부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환급 또는 납세고지

<삭 제>

○ 별도 고시 제정에 따라 삭제

- 2. 신용담보업체인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그 취소내역을 전산에 등록
- 3. 포괄담보업체인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담보내역을 삭제
- 4. 해당 업체가 납부기한이내에 해당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공된 담보물을 체납세액에 충당

제99조(환급등의 관련서류 보관 및 정리방법) ① 환급등의 신청인이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2. (생략)
- 3. 영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수출사실 확인서류”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 4. (생략)
- 5. 영 제28조제1항제5호에서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말한다.

제99조(환급등의 관련서류 보관 및 정리방법) ① -----

-----.

- 1. 2. (현행과 같음)
- 3. ----- “수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란 -----
-----.
- 4. (현행과 같음)
- 5. -----

-----.

○ 조문 정비

가. (생략)

나. 완제품을 구매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완제품내국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

다. (생략)

라. 환급신청건별 환급금 계산내역표 (조건표)

마. (생략)

② 환급신청인 또는 제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 제28조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보관할 때에는 환급등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보관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서류를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자료보존매체로 관련서류를 보관하는 자에게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자료보존매체에서 보존하는 자료를 서류로 작성하

가. (현행과 같음)

나. -----
----- 완제품 내국신용장 -----

다. (현행과 같음)

라. ----- 계산 내역표 (조건표)

마. (현행과 같음)

② -----

----- 보관·관리 -----

③ -----

자료의 제출 ----- 자료보존매체 -----

○ 띄어쓰기 오류 수정

○ 띄어쓰기 오류 수정

○ 조문 정비

○ 조문 정비

여 제출하게 하거나 자료보존매체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101조(전산장애 시 환급등의 신청방법) 통신망의 장애 또는 업체의 단말기장애 등으로 인하여 신청서의 전송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전산 장애시 환급업무처리방안(수출 47130-1 0120호, '98.7.6)”에 따라 환급등을 신청 하여야 한다.

제101조(전산장애 시 환급등의 신청방법) -----

----- 관세 청장이 정하는 방법 -----
-----.

○ 인용조문 오류 정정

제102조(외국통화로 계약된 국내거래물품 등에 대한 환율 적용) 이 고시 제46조, 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공급 또는 반입(적재)하는 물품이 외국통화로 계약된 경우에 공급가격 등의 원화는 기납증상의 양도(매입)일자 또는 환급대상 물품 반입(적재)확인서의 신청(적재)일에 적용되는 수출환율로 환산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제102조(외국통화로 계약된 국내거래물품 등에 대한 환율 적용) -----

----- 환급대상물품 반입(적재)확인서 -----
-----.

○ 띄어쓰기 오류 수정

제104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

제104조(재검토기한) -----

○ 재검토기한 재설정

·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022년 7
월 1일 ----- 매 3년-----
-----6월 30일-----

-----.